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10. 30.

기획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1일 백선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현행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창업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료 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정비(안 제6조).

나.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사유를 신설 (안 제9조제3항).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입주자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 퇴거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용료 반환 절차·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9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청년담당관

라. 입법예고 : 2026. 10. 21. ~ 2026. 10. 26. (5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의 사정으로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용료 반환 절차와 금액 등 세부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음.

○ 검토 결과, 현행 조례는 청년창업센터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 청년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용료 반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료 처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반환 사유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입주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입주 청년이 납부하였던 사용료를 반환하는 내용 규정이므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 청년담당관 이윤희